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34차) 개정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2.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2.1 적용범위 2.1.1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16,000만원 이하의 고압 배전공사 및 8,000만원 이하의 저압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의 경우 인입선 시공은 필요에 따라 한전 저압 협력회사가 아닌 전기공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2.2 대상공사 구분 2.2.1 고압 협력회사(배전 전문회사 및 배전 협력사) 수행공사 다) 배전운영실 근무형태 개선 우선시행 사업소에 한하여 저압 협력회사가 해당 사업소 고압 협력회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략) 2.2.2 저압 협력회사 수행공사 (중략) 한전에서 지시하는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 또는 저압정전 복구공사(배전운영처 별도 안내를 수행한다. (다만, 전주교체, 변압기교체 및 7,000V를 초과하는 설비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H0-품질-절차-0003_업무표준(SOP) 관리절차서_11차개정」 [부록3]의 작성 표준 준용하여 번호체계 일괄적용 2.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2.1 적용범위 2.1.1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16,000만원(전문회사) 및 30,000만원(협력사) 이하의 고압 배전공사 및 8,000만원 이하의 저압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의 경우 인입선 시공은 필요에 따라 한전 저압 협력회사가 아닌 전기공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2.2 대상공사 구분 2.2.1 고압 협력회사(배전 전문회사 및 배전 협력사) 수행공사 다) 저압 협력회사 <u>가 동의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u> 해당 사업소 고압 협력회사가 <u>해당 공사구역</u>에서 발생하는 (중략) 2.2.2 저압 협력회사 수행공사 (중략) 한전에서 지시하는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 <u>및 「저압정전 복구공사 업무처리 절차서」에서 정하는 저압 정전 복구공사를 수행한다.</u>	○ 협력사 시공통보 상한 조정 ○ 계약 이행 불가능시의 경우 방안 마련 ○ 저압정전복구 업무 명확화

현행	개정	비고																
3. 책임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책임</th><th>책임 사항</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협조부서</td><td>상생조달처</td><td>·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집행기준 관리 및 운영</td></tr> <tr> <td>배전운영처</td><td>·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및 운영 ·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자격관리 및 운영 · 배전 보수공사 관리 및 운영 · 도서 저압 협력회사 관리 및 운영 · 계기·부속장치 공사관리(인입선 공사 불포함) 및 운영 · AMI 관련 공사관리 및 운영</td></tr> </tbody> </table>	구분	책임	책임 사항	협조부서	상생조달처	·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집행기준 관리 및 운영	배전운영처	·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및 운영 ·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자격관리 및 운영 · 배전 보수공사 관리 및 운영 · 도서 저압 협력회사 관리 및 운영 · 계기·부속장치 공사관리(인입선 공사 불포함) 및 운영 · AMI 관련 공사관리 및 운영	3. 책임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책임</th><th>책임 사항</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협조부서</td><td>상생조달처</td><td>·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집행기준 관리 및 운영</td></tr> <tr> <td>배전운영처</td><td>·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및 운영 ·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자격관리 및 운영 · 배전 보수공사 관리 및 운영 · 도서 저압 협력회사 관리 및 운영 · 계기·부속장치 공사관리 및 운영 · <u>저압고장복구 업무 및 저압협력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u></td></tr> </tbody> </table>	구분	책임	책임 사항	협조부서	상생조달처	·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집행기준 관리 및 운영	배전운영처	·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및 운영 ·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자격관리 및 운영 · 배전 보수공사 관리 및 운영 · 도서 저압 협력회사 관리 및 운영 · 계기·부속장치 공사관리 및 운영 · <u>저압고장복구 업무 및 저압협력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u>	○ 문구 명확화
구분	책임	책임 사항																
협조부서	상생조달처	·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집행기준 관리 및 운영																
	배전운영처	·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및 운영 ·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자격관리 및 운영 · 배전 보수공사 관리 및 운영 · 도서 저압 협력회사 관리 및 운영 · 계기·부속장치 공사관리(인입선 공사 불포함) 및 운영 · AMI 관련 공사관리 및 운영																
구분	책임	책임 사항																
협조부서	상생조달처	·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집행기준 관리 및 운영																
	배전운영처	·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및 운영 ·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 자격관리 및 운영 · 배전 보수공사 관리 및 운영 · 도서 저압 협력회사 관리 및 운영 · 계기·부속장치 공사관리 및 운영 · <u>저압고장복구 업무 및 저압협력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u>																
5. 고압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운영 5.1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금액 산출 5.1.1 사업소 연간 발주예상금액 사업소별 최근 2년간('22~'23년, 최초계약일 기준) 배전공사 중 긴급공사 전체와 도금액(설계) 16,000만원이하 공사의 도금액(계약) 실적 합산치(VAT 포함)의 연간 평균으로 산정하며, '2.나'항의 공사유형에 따라 전문회사 및 협력사의 실적을 구분한다.	5. 고압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운영 5.1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금액 산출 5.1.1 사업소 연간 발주예상금액 사업소별 최근 2년간(<u>'24~'25년</u>, 최초계약일 기준) 배전공사 중 <u>전문회사는</u> 긴급공사 전체와 도금액(설계) <u>16,000만원이하 공사의 도금액(계약) 실적 합산치(VAT 포함)의 연간 평균으로 산정하며, 협력사의 경우 도금액(설계) 30,000만원 이하 공사의 도금액(계약) 실적 합산치(VAT 포함)의 연간 평균으로 산정하고</u>, '2.나'항의 공사유형에 따라 전문회사 및 협력사의 실적을 구분한다. 다만, 향후 추정도금액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력사업처장의</u> 판단하에 발주 예상금액을 자체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은 [별표17]에 따른다.	○ 기준금액 상·하한 기준금액 및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변경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비 고
5.1.3 공사구역 운영 라) (신설) 5.1.4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금액 다) (신설) 5.2 고압 협력회사 전담지역 운영 5.2.1 지역전담 기준금액 운영 가) 지역전담 기준금액은 1차 사업소 단위로 동일하게 운영한다.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반기 1회 이상 본부내 계약된 협력회사간 수주금액 편차를 분석하여 필요시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전담 기준금액을 5백만원 단위로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나)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 심의위원회는 1차사업소 전력사업처장 주관으로 본부 내 배전 2직급 5인 이상이 참	5.1.3 공사구역 운영 <u>라) 통합 공사구역 운영시 협력회사 현장사무소에서 입접사업소 공사현장까지 장시간(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원거리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u> 5.1.4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금액 <u>다) 사업소 운영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필요시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u> 5.2 고압 협력회사 전담지역 운영 5.2.1 지역전담 기준금액 운영 가) 지역전담 기준금액은 <u>공사구역</u> 단위로 운영한다.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반기 1회 이상 본부내 계약된 협력회사의 <u>수주금액을 분석하고, 동일 공사구역 내 협력회사간 편차를 분석한다. 편차율이 10% 이상 또는 편차 3억원 이상일 경우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에</u> 상정하여 지역전담 기준금액을 5백만원 단위로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나) <u>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은 대표사업소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검토 후 필요</u>	○ 원거리할증 적용 ○ 상·하한 기준금액 보완사항 단서조항 추가 ○ 적용단위 및 조정대상 개정, 심의위원회 신설 ○ 대표사업소에서 기준금액 조정

현행	개정	비고																																																	
석하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내용 및 기준일을 관내 협력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영업배전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 다) 공사유형별 지역전담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전문회사</th><th colspan="2">협력사</th></tr><tr><th>긴급공사^{주1)}</th><th>배전선로이설</th><th>보강공사</th><th>신규공사</th><th>비설비설계공사^{주2)}</th></tr><tr><td>최초계약('25.1.1 ~)</td><td rowspan="2">전 공사 지역전담</td><td>5천만원</td><td>2천만원</td><td>5천만원</td><td>2천만원</td></tr><tr><td>조정상한금액</td><td>5천만원</td><td>3천만원</td><td>5천만원</td><td>3천만원</td></tr></table>	구분	전문회사			협력사		긴급공사 ^{주1)}	배전선로이설	보강공사	신규공사	비설비설계공사 ^{주2)}	최초계약('25.1.1 ~)	전 공사 지역전담	5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조정상한금액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u>시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u> <u>다)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는 [별표17]에 따른다.</u> <u>라)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내용 및 기준일을 조정대상 협력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영업배전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u> <u>마) 공사유형별 지역전담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u> <table><tr><th colspan="4">전문회사</th><th colspan="3">협력사</th></tr><tr><th>구분</th><th>긴급공사^{주1)}</th><th>배전선로이설</th><th>보강공사</th><th><u>구분</u></th><th>신규공사</th><th>비설비설계공사^{주2)}</th></tr><tr><td>최초계약('25.1.1 ~)</td><td rowspan="2">전 공사 지역전담</td><td>5천만원</td><td>2천만원</td><td><u>최초 계약('27.1.1 ~)</u></td><td><u>3천만원</u></td><td>2천만원</td></tr><tr><td>조정상한금액</td><td>5천만원</td><td>3천만원</td><td><u>조정상한금액</u></td><td>5천만원</td><td>3천만원</td></tr></table>	전문회사				협력사			구분	긴급공사 ^{주1)}	배전선로이설	보강공사	<u>구분</u>	신규공사	비설비설계공사 ^{주2)}	최초계약('25.1.1 ~)	전 공사 지역전담	5천만원	2천만원	<u>최초 계약('27.1.1 ~)</u>	<u>3천만원</u>	2천만원	조정상한금액	5천만원	3천만원	<u>조정상한금액</u>	5천만원	3천만원	요청시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구체화 ○ 내 일부내용 분리 ○ 협력사 계약일자 및 최초 기준금액 하향 조정
구분		전문회사			협력사																																														
	긴급공사 ^{주1)}	배전선로이설	보강공사	신규공사	비설비설계공사 ^{주2)}																																														
최초계약('25.1.1 ~)	전 공사 지역전담	5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조정상한금액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전문회사				협력사																																															
구분	긴급공사 ^{주1)}	배전선로이설	보강공사	<u>구분</u>	신규공사	비설비설계공사 ^{주2)}																																													
최초계약('25.1.1 ~)	전 공사 지역전담	5천만원	2천만원	<u>최초 계약('27.1.1 ~)</u>	<u>3천만원</u>	2천만원																																													
조정상한금액		5천만원	3천만원	<u>조정상한금액</u>	5천만원	3천만원																																													
5.2.2 도서지역 분할관리 비연륙 도서지역의 경우 공사지연 방지 및 신속한 정전 복구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1차사업소의 판단하에 해당 공사구역의 전문회사 또는 협력사에서 (중략)	5.2.2 도서지역 분할관리 비연륙 도서지역의 경우 공사지연 방지 및 신속한 정전 복구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해</u> 해당 공사구역의 전문회사 또는 협력사에서 (중략)	○ 도서지역 운영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비 고
6. 저압 협력회사 운영 6.1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급액 산출 6.1.1 사업소 발주예상금액 사업소별 직전 2개년('22~'23년) 저압 긴급공사(8천만원 초과분)와 도급액 8천만원 이하 저압 배전공사의 총 준공 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기준, VAT 포함) 합산치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가) AMI 구축 계기 교체 공사와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 (유지보수) 공사실적은 제외하고, 신·증설 계기부설 및 인입선 공사는 '20~'21년 실적으로 반영한다. 나) 도서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사업소의 경우 최근 2년간('24~'25년)의 도서 서비스센터 위탁공사 도급액을 합산한다. 다) 향후 추정도급액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도급액 조정 심의위원회” 상정 등 1차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발주예상금액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추정도급액 조정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 보안서약서 징구 필수)	6. 저압 협력회사 운영 6.1 협력회사 수 및 추정도급액 산출 6.1.1 사업소 발주예상금액 사업소별 직전 2개년(<u>'24~'25년</u>) 저압 긴급공사(8천만원 초과분)와 도급액 8천만원 이하 저압 배전공사의 총 준공 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기준, VAT 포함) 합산치<u>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공종은 아래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한다.</u> 가) AMI 구축 계기 교체 공사와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 (유지보수) 공사실적은 제외<u>한다.</u> <u>나) 검정만료 전력량계 교체공사는 '27~'28년 교체 수량을 고려한 예상 도급액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반영한다.</u> <u>다) 저압 정전복구 공사는 '25년도 저압 정전복구 공사 실적을 고려한 사업소별 예상 도급액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반영한다.</u> <u>라) 도서 서비스센터를 관할하는 사업소의 경우 최근 2년간(<u>'24~'25년</u>)의 도서 서비스센터 위탁공사 도급액을 합산한다.</u> <u>마) 향후 추정도급액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증가할 것</u>	○ 저압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산정 기준 변경

현 행	개 정	비 고
6.1.2 저압 협력회사의 추정도급액 기준금액은 31억원/2년 (VAT포함) 으로 한다. 6.2 저압 협력회사 전담지역 운영 긴급공사 등 선착공 공사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3,000만원 이하 다음 공사에 한하여 지역전담 체제로 운영하며, 긴급공사는 ‘5.나.1).다).주1)’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6.2.8 저압 정전복구 공사(배전운영처 별도 안내) 6.2.9 도서 서비스센터 담당구역의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공사	으로 예상되는 경우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력사업처장의 판단하에 발주예상금액을 자체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은 [별표17]에 따른다.</u> 6.1.2 저압 협력회사의 추정도급액 기준금액은 <u>38억원/2년 (VAT포함)</u> 으로 한다. 6.2 저압 협력회사 전담지역 운영 긴급공사 등 선착공 공사 및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3,000만원 이하 다음 공사에 한하여 지역전담 체제로 운영하며, 긴급공사는 ‘5.나.1).다).주1)’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u>단, 「저압정전 복구공사 업무처리 절차서」에서 정하는 저압정전 복구공사는 8,000만원 이하로 적용하며, 휴일·야간은 공사구역 전체로 한다.</u> <u>6.2.8</u> 도서 서비스센터 담당구역의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공사	○ 기준금액 변경 ○ 전담지역 운영 내용 명확화
7. 협력회사 선정 7.4 입찰시행방법 7.4.3 입찰방법 가) 중점사업소 및 1차사업소는 아래와 같이 입찰을 시행한다.	7. 협력회사 선정 7.4 입찰시행방법 7.4.3 입찰방법 가) 중점사업소 및 1차사업소는 아래와 같이 입찰을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비 고
① 협력회사를 관리하는 대표사업소 담당 부서는 공종별 공사비 단가 및 설계 기준에 의거 고압 협력회사는 추정가격 16,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 저압 협력회사는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 공사의 서로 다른 가상설계서를 입찰대상 공사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송부한다. 7.6 낙찰예정자 구비사항 7.6.1 보유인력 확보기준 가) 용어의 정의 ① 상근 I 인력은 「배전공사 기초인력교육·자격 관리절차서」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실제 배전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상근 I 인원의 공사 참여실적 확인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후 별도 안내) 다) 협력사는 하단에 정의한 상근 I 및 상근 II 인력의 총원 이상의 인원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① 협력회사를 관리하는 대표사업소 담당 부서는 공종별 공사비 단가 및 설계 기준에 의거 <u>고압 전문회사는 추정가격 16,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 고압 협력사는 추정가격 30,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u>, 저압 협력회사는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제외) 공사의 서로 다른 가상설계서를 입찰대상 공사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송부한다. 7.6 낙찰예정자 구비사항 7.6.1 보유인력 확보기준 가) 용어의 정의 ① 상근 I <u>및 협력사 상근</u> 인력은 「배전공사 기초인력 교육·자격 관리절차서」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실제 배전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상근 I <u>및 협력사 상근</u> 인원의 공사 참여 실적 확인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후 별도 안내) 다) 협력사는 하단에 정의한 <u>추정도금액 구간별 차등한 상근인력</u>의 총원 이상의 인원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 협력사 시공통보 금액 변경 ○ 협력사 상근 I 및 상근 II 구분 폐지에 따른 문구 추가 ○ 협력사 상근 구분 폐지 및 추정도금액 구간별 협력사 최소 확보 대상 인원 차등 적용

현행			개정				비고
구분	최소 확보 대상인원		추정도급액	최소 확보 대상인원 (상근인력)			
	총원	직무별 구성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계	
상근Ⅰ	7명 이상	무정전전공 3명 이상 및 배전전공 * 지중배전전공 2명 이상 보유 필수(겸임가능)	30억원 미만	4명	2명	6명	○ 협력사 대상 필수인력 확보기준 조정제도 신설
상근Ⅱ	7명 이상	공사관계자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4명	4명	8명	
			35억원 이상	4명	6명	10명	
			※ 단, 지중배전전공 2명 이상 필수 보유 (겸임가능)				
			② 협력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1년차 실적을 기반으로 2년차 추정도급액을 재평가 하여 추정도급액 구간별 최소 확보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보유인력 확보기준의 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협력사 필수인력 확보기준 조정]				
			■(주관)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				
			■(조정시기) '28.1월				
			■(조정내용) '27.1월 ~ 12월 발주실적 기반 상근인력 최소 확보기준 조정 - 협력사별 추정도급액 및 발주실적(계약도급비) 편차 분석, '28년 실적 예측, 인력기준 조정안 마련 및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상정				
			■(기타사항) 기준인원 조정내용 및 기준일을 조정대상 협력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력이 총원된 경우에 한하여 기능인력 실사 시행 - 실사와 관련한 세부 항목은「배전공사 인력·장비 실사 업무절차서」준용				
라) 저압 협력회사는 하단에 정의한 상근Ⅰ 및 상근Ⅱ 인력의 총원 이상의 인원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라) 저압 협력회사는 하단에 정의한 상근Ⅰ 및 상근Ⅱ 인력의 총원 이상의 인원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3)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상기 확보인원수 이외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별표11]」에 따라 상근전공 인원 수를 별도 산정한다.			③ 저압정전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저압 협력회사의 상근Ⅰ 기준인원은 「저압정전 복구공사 업무처리 절차서」를 따르며, '27년 7월 1일 부로 최소 확보 기준을 적용한다.				○ 저압정전복구 공사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기준

현 행	개 정	비 고
7.6.3 자재야적장 및 시설기준 나) 고압 협력회사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PCBs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PCBs 함유 폐기물을 보관하는 (중략) 7.7 인원 등 확인방법 7.7.1 상근전공(배전전공, 무정전전공, 지중배전전공, 내선전공) 상근전공은 낙찰예정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상세내역 포함)” 및 관련전공 자격증에 의하여 확인된 인원으로 한다. 7.8 계약체결 7.8.4 협력회사 낙찰예정자가 ‘사’항에 따른 낙찰예정자 구비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중략) 7.10 계약기간 7.10.1 협력회사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나)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이행기간은 '25년 1월 1일 '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 지연 등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도서 저압 협력회사는 상기 확보인원수 이외 「도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별표11]」에 따라 상근전공 인원 수를 별도 산정한다. 7.6.3 자재야적장 및 시설기준 나) 고압 협력회사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7 인원 등 확인방법 7.7.1 상근전공(배전전공, 무정전전공, 지중배전전공, 내선전공) 상근전공은 낙찰예정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상세내역 포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관련전공 자격증에 의하여 확인된 인원으로 한다. 7.8 계약체결 7.8.4 협력회사 낙찰예정자가 '7.6'항에 따른 낙찰예정자 구비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중략) 7.10 계약기간 7.10.1 협력회사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나)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이행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 지연 등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세부 적용기준 관련 법령으로 일원화 ○ 총액계약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문구 수정 ○ 계약기간 수정

현 행	개 정	비 고
8. 계약금액 산출 및 시공통보 8.1 단위공사 계약금액 산출 주3) A는 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법정 비용의 합 8.3 시공통보 8.3.2 유형별 협력회사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 통보한다. 가) 시공통보 방법 및 순서 ② (중략) 단, 고장정전 또는 차량충돌 긴급복구공사비와 공사업체 조달 지입자재비, 도서 서비스센터 담당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계기관련 신증설 및 계획공사 제외)는 시공통보 누계금액에서 제외한다. 나) 예외조치 사항 (신 설)	8. 계약금액 산출 및 시공통보 8.1 단위공사 계약금액 산출 주3) A는 <u>산업안전보건관리비</u>,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법정 비용의 합 8.3 시공통보 8.3.2 유형별 협력회사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 통보한다. 가) 시공통보 방법 및 순서 ② (중략) 단, 고장정전(<u>저압정전복구공사 포함</u>) 또는 차량충돌 긴급복구공사비와 공사업체 조달 지입자재비, 도서 서비스센터 담당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계기관련 신증설 및 계획공사 제외)는 시공통보 누계금액에서 제외한다. 나) 예외조치 사항 ① (중략) <u>3) 공사구역 내 시공통보 가능한 동일 유형의 저압 협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일 공사구역 내 고압 협력회사 또는 인접 공사구역의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할 수 있다.</u>	○ 문구 수정 ○ 저압정전복구공사 포함 ○ 파업 등 동원이 불가할 때 다른 업체 동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비 고
9. 시공관리 9.1 책임시공 9.1.3 모든 공사는 해당 공종의 작업안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공전 공정별 핵심 Check Point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략) 9.1.7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13.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9.1.8 전문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노·사 대표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非노조원으로 구성된 경우 고용인 및 피고용인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는 필요시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다. 9.2 작업종사자의 자격 9.2.1 배전 협력회사는 무정전 배전공사 편조인원(4인) 이상을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	9. 시공관리 9.1 책임시공 9.1.3 <u>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책임자 주관하에</u> 모든 공사 해당 공종의 작업안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공전 공정별 핵심 Check Point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략) 9.1.7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13.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u>단, 저압정전 복구공사와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업무는 관련 절차서를 따른다.</u> 9.1.8 <u>전문회사 및 저압 협력회사</u>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노·사 대표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非노조원으로 구성된 경우 고용인 및 피고용인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u>단, 협력사는 필요시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다.</u> 9.2 작업종사자의 자격 9.2.1 배전 협력회사는 무정전 배전공사 <u>시공인증업체 관리 절차서의 시공인증 업체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u>	○ 시행주체 명확화 ○ 저압정전복구 별도 SOP운영 예정으로 문구 추가 ○ 고장복구 담당 협력회사로 적용 대상 확대 ○ 가공케이블 중 단, 엘보접속 작업

현 행	개 정	비 고
자격 전공을 확보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2.2 배전 협력회사 소속 기능인력이 작업시행 중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였을 경우, 개인별 별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공사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한다. 9.3 공사시공 9.3.9 (중략) 계기관련 공사로 철거된 AMI 통신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세부 처리기준 별도 안내 예정)	<u>※ 단, 특고압 가공케이블 종단·엘보접속재 작업은 “9.나.1)다)항”을 준용한다.</u> 9.2.2 배전 협력회사 소속 기능인력이 작업시행 중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였을 경우, <u>「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및 「지중 배전공사 시공회사 업무절차서」의 조치 절차를 따른다.</u> 9.3 공사시공 9.3.9 (중략)계기관련 공사로 철거된 AMI 통신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u>하며, 세부 사항은 전기계기업무 기준 및 AMI 현장업무 절차서를 따른다.</u>	사항 명확화 ○ 기능인력 제재 업무 이관 반영 ○ 관련기준 명확화
10. 안전 및 품질관리 10.1 안전관리 10.1.3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발생된 긴급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야간 작업자의 피로감 및 부담감 완화를 통해 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1.7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속직원이 안전작업수칙을	10. 안전 및 품질관리 10.1 안전관리 10.1.3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발생된 긴급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야간 작업자의 피로감 및 부담감 완화를 통해 <u>안전</u>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0.1.7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속직원이 안전작업수칙을	○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비 고
준수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 기술 지도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10.1.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및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안전계약특수조건을 비롯하여 안전작업수칙,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절차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가이드, 안전 보건관리비 Guide Book 등 상시 개정된 관련 절차서를 따른다. 나)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준수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 기술 지도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관련 비용은 <u>산업안전보건</u>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u>10.1.8 계약상대자는</u>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및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안전계약특수조건을 비롯하여 <u>건설공사분야</u> 안전작업수칙,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산업재해 보고 및 조사절차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가이드, <u>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u> Guide Book 등 상시 개정된 관련 절차서를 따른다. 나) <u>산업안전보건관리비</u> 집행	○ 문구 명확화 ○ 문구 수정
11. 준공검사 11.1 계약상대자는 단위공사 준공 시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으로 준공검사보고서를 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준공신고서에는 준공물자 기별조서, 준공도면, 공사비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준공(기성)검사 11.1 계약상대자는 단위공사 준공 시 배전공사 협력회사 시스템으로 준공(기성)검사보고서를 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준공(기성)신고서에는 준공물자 기별조서, 준공도면, 공사비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현행					개정					비고	
13. 사후관리 13.1.1 (중략) 가) 인센티브 마일리지 항목					13. 사후관리 13.1.1 (중략) 가) 인센티브 마일리지 항목					○ 인센티브/패널티 개정사항 반영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① 무정전 전공 고용 유지 (전문회사)	기준	전문회사 상근1인력 중 무정전전공(5명 이상)이 1년간 인원 변동없이 지속 고용 및 작업 투입여부 확인 시		250	1년차	① 무정전 전공 고용 유지 (전문회사)	■ 전문회사 상근1인력 중 무정전전공(5명 이상)이 1년간 인원 변동없이 지속 고용 및 작업 투입여부 확인 시	250	1년차	275	2년차
				275	2년차						
	확인	작업통보서 및 QR 대조점검 후 시스템 자동 산정		300	3년차						
② 보험 가입	기준	근로자 재해보험 혹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후 유지 시		75	매분기	② 근로자 재해 대책	■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시 ■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시 주1)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 상근1최소 확보 대상인원 이상	100	계약시	50	매분기
	확인	분기별 보험가입증서 제출						50			
③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기준	본사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년 1회)		250	선정시	③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 본사주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 선정시(년 1회)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500	선정시	75	매분기
	확인	우수협력회사 선정 공문 제출						150			
④ 안전관리 위탁/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위탁/선임 유지시		75	매분기	④ 안전관리 위탁/선임	■ 법정 비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위탁 유지시 ■ 법정 비대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유지시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75	150		
	확인	분기별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혹은 위탁계약서 제출									
⑤ 협력회사 자체 전관리	기준	a 협력회사 대표자 주관 현장점검 - 현장점검 : 5점/건, 자체 계도서 발부 : 10점/건 b 매 분기 대표자 현장 입회 10회 이상 시		최대 150	매분기	⑤ 대표자 안전관리 활동	■ 협력회사 대표자 주관 현장 안전점검 - 자체점검 : 30점/건 주1) 재해방지책임자가 점검시작 QR을 전송하고, 30분 이후 종료 QR 전송건에 대해서만 인정 (당일 안전점검 지적 시 무효)	30 (최대 900/분기)	30 (최대 900/분기)	건	
				150							
	확인	a 자체점검표 및 지도서 제출 b 대표자 QR 실적 확인 후 시스템 자동 산정		-							
⑥ 장비 교체	기준	계약기간 내 장비 신품 구매 및 교체 - 항목별 가점 : 절연버켓트럭(150),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75), 바이패스케이블(75), 공사용개폐기(50) ※ 각 장비별 규격은 [별표1] 장비 확보기준에 따름		50 ~ 150	발생시 (건당)	⑥ 장비 교체	■ 계약기간 내 장비, 공구의 신품 구매 및 교체 - 항목별 가점 : 절연버켓트럭(150), 이동용 변압기차 또는 장치(75), 바이패스케이블(75), 공사용개폐기(50), 절연스틱 4종(핫스틱(10), 로터스틱(10), 핸드스틱(10), 그랩스틱(10)) 주1) 각 장비 및 공구별 규격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별표1~3 확보기준에 따름 주2) 시공회사별 1회 적용(다수 공사 적용 불가)	10 ~ 150	10 ~ 150	발생시 (건당)	
	확인	구매증빙(세금계산서 등) 및 기기시험성적서 제출									
⑦ 정책 반영	기준	본사 처·실 내 정책 이행 시		최대 250	발생시						
	확인	해당 항목 반영 공문 내 내용 참조 [붙임4 참조]									

현행	개 정				비 고																															
	<table><tr><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가점</th><th>주기</th></tr><tr><td>⑦ 정책 반영</td><td>■ 본사 처·실 내 정책 이행 시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 (다수 공사 적용 불가)</td><td>최대 250</td><td><u>달성</u> 시</td></tr><tr><td rowspan="2">⑧ 자율 안전관리 참여</td><td>④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취득 주1) 안전관련 자격증 : 국가공인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td><td>50</td><td>건</td></tr><tr><td>⑤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외부기관 안전교육 참여 주2) 외부 안전교육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 기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td><td>20 (최대 100/년)</td><td>건 (4H 이상)</td></tr><tr><td rowspan="6">⑨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td><td>■ 계약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매 및 사용</td><td>구매</td><td>사용</td></tr><tr><td>▶ 관제용 이동형 CCTV</td><td>-</td><td>200</td></tr><tr><td>▶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 운반기계 등 스마트 안전장치</td><td>70</td><td>100</td></tr><tr><td>▶ 에어백 조끼</td><td>50</td><td>75</td></tr><tr><td>▶ 스마트글래스, 이동형 CCTV, 바디캠(관제 미지원)</td><td>20</td><td>30</td></tr><tr><td>주1) 구매는 최초 1회만 부여하며, 사용은 매분기별로 부여 주2)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사용 가점만 부여(구매 가점 미부여) 주3) 당일 작업이 있는 공사들 중에서 1개 이상 현장에서 스 마트 안전 장비를 항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적발시 해당 분기 사용 가점 미부여 주4) 관제용 이동형 CCTV는 협력회사 사무실에서 재해방지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야만 가점 부여하며, 1대 추가 운영시 마다 100점/분기 가산 주5)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는 무 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 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되어야 하며,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 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 위험시 경보가 울려 야만 가점 부여 주6) 에어백조끼는 협력회사 상근 I 무정전전공 확보인원 이상 구매시 가점 부여</td><td colspan="2">매분 기</td></tr></table>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⑦ 정책 반영	■ 본사 처·실 내 정책 이행 시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 (다수 공사 적용 불가)	최대 250	<u>달성</u> 시	⑧ 자율 안전관리 참여	④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취득 주1) 안전관련 자격증 : 국가공인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50	건	⑤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외부기관 안전교육 참여 주2) 외부 안전교육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 기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20 (최대 100/년)	건 (4H 이상)	⑨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 계약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매 및 사용	구매	사용	▶ 관제용 이동형 CCTV	-	200	▶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 운반기계 등 스마트 안전장치	70	100	▶ 에어백 조끼	50	75	▶ 스마트글래스, 이동형 CCTV, 바디캠(관제 미지원)	20	30	주1) 구매는 최초 1회만 부여하며, 사용은 매분기별로 부여 주2)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사용 가점만 부여(구매 가점 미부여) 주3) 당일 작업이 있는 공사들 중에서 1개 이상 현장에서 스 마트 안전 장비를 항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적발시 해당 분기 사용 가점 미부여 주4) 관제용 이동형 CCTV는 협력회사 사무실에서 재해방지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야만 가점 부여하며, 1대 추가 운영시 마다 100점/분기 가산 주5)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는 무 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 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되어야 하며,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 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 위험시 경보가 울려 야만 가점 부여 주6) 에어백조끼는 협력회사 상근 I 무정전전공 확보인원 이상 구매시 가점 부여	매분 기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점	주기																																	
⑦ 정책 반영	■ 본사 처·실 내 정책 이행 시 주1) 시공회사별 1회 적용 (다수 공사 적용 불가)	최대 250	<u>달성</u> 시																																	
⑧ 자율 안전관리 참여	④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취득 주1) 안전관련 자격증 : 국가공인 안전관련 산업기사 이상	50	건																																	
	⑤ 재해방지책임자(또는 시공관리책임자) 안전 관련 외부기관 안전교육 참여 주2) 외부 안전교육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 기관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20 (최대 100/년)	건 (4H 이상)																																	
⑨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 계약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매 및 사용	구매	사용																																	
	▶ 관제용 이동형 CCTV	-	200																																	
	▶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 운반기계 등 스마트 안전장치	70	100																																	
	▶ 에어백 조끼	50	75																																	
	▶ 스마트글래스, 이동형 CCTV, 바디캠(관제 미지원)	20	30																																	
	주1) 구매는 최초 1회만 부여하며, 사용은 매분기별로 부여 주2)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사용 가점만 부여(구매 가점 미부여) 주3) 당일 작업이 있는 공사들 중에서 1개 이상 현장에서 스 마트 안전 장비를 항상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적발시 해당 분기 사용 가점 미부여 주4) 관제용 이동형 CCTV는 협력회사 사무실에서 재해방지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야만 가점 부여하며, 1대 추가 운영시 마다 100점/분기 가산 주5)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는 무 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 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되어야 하며,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 타 위험 정보 등)이 표시되고 충돌 위험시 경보가 울려 야만 가점 부여 주6) 에어백조끼는 협력회사 상근 I 무정전전공 확보인원 이상 구매시 가점 부여	매분 기																																		

현행				개정				비고		
나) 패널티 마일리지 항목				나) 패널티 마일리지 항목				○ 인센티브/패널티 개정사항 반영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1. 시공통보 이행불응 (전문회사)	자재 고의 미수령, 주자재 처치 후 2주내 작업통보서 미제출 등 시공통보를 적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	① 무단작업 또는 시공방법 임의변경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무단 작업 또는 시공방법(간접활선 등 공법 변경) 임의 변경한 경우	500	건			
2. 시공지연 패널티 (협력사)	시공지연 발생 시 ※ 시공지연 : 사업소별 과거 2년치 신규 공사의 분기별, 금액 구간별 평균 시공일수 산출 및 여유율(10%)을 적용하여 영배시스템을 통하여 공사건별로 지연 여부 평가		100	② 대외민원 유발	시공지연, 부실공사, <u>기자재 관리 미흡</u> 으로 민원 유발 시 주1) 언론보도(인터넷, 신문 등), 대내·외 감사지적, 지자체 등 행정기관 시정 명령, 과태료, 시민재해(넘어짐, 교통사고 등) 발생 시 등	300	건			
3. 선착공 통보 동원불응	선착공 통보 후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5시간 이내 작업현장 미도착시		300	③ 기능인력 부적정 운영	a) 계약기간동안 기신고된 인원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b)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기능인력이 상이한 경우 - <u>작업통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능인력이 공사에 참여한 경우</u> - <u>작업통보서에 기능인력을 보통인부로 기재하고 현장에서 기능인력 자격의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u> c) 협력회사에 소속된 기능 인력을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d) 월별 상근 I 무정전 전공의 무정전공사 시공 현장 참여율이 월 60% 미만인 경우	500	매 적발시			
4. 선착공 통보 동원지체	선착공 통보 후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2시간 초과하여 작업현장 도착 시		100		④ 필수장비 및 <u>기자재</u> 부적정 운영	a) 계약기간동안 기신고 된 장비 및 야적장, 현장사무소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b)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장비가 상이한 경우 c) 협력회사에 소속된 장비를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d) <u>사공지제 임의변경 또는 사급자재 손상실이 확인된 경우</u>		500	매 적발시	
5. 무단작업 또는 시공방법 임의변경	①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무단 작업 또는 시공방법(간접활선 등 공법 포함) 임의 변경한 경우 ② 사전 승인없이 사급 및 지입자재를 설계 내역과 달리 시공할 경우		300			⑤ 시공관리책임 자 상주 위반	시공관리책임자 현장 미상주 시	500		매 적발시
6. 정전 유발	작업중 또는 공사하자로 정전발생	일시정전(A~C등급) 일시정전(D등급) 순간정전 순시정전	500 300 200 100	⑥ 지시 불이행	a) 정책변경 및 중점 요구사항 <u>미 이행</u> b) 사업소에서 참석 요청한 회의 및 교육 불참 c) <u>협력회사가 시공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u> 주1) 분기별 정기 영업업무 심의위원회 결과, 협력회사측 사유로 인한 시공지연 대상이 5건 이상이고 전체 영업업무 심의위원회 대상 공사의 10% 이상인 경우 d) 선착공 통보 후 <u>협력회사의</u>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5시간 이내 작업현장 미도착 시 e) 선착공 통보 후 <u>협력회사의</u>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2시간 초과하여 작업현장 도착 시 ① <u>고객응대 미흡, 정전복구지연 등으로 잔가인 현장출동시</u>	100 300 300 월최대 100	건 매분기 건 건 건			
7. 중대재해 발생	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시 ([별표16 참조])		계약해지		⑦ 중대재해 발생	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시 ([별표16] 참조)	계약해지			
8. 공사 시정통보서 발행	시정통보서 발행 또는 공사건별 시공품질 평가결과 분기별 평균 누계 감점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매 10점마다 100점 추가 부여, 최대 500점)		100							
9. 기자재 관리 미흡	a) 불량기자재(비규격품, 하자품 등)를 현장에 사용 시 b) 폐전주, 근가, 애자류등 기자재를 현장 방치 시 c) 야적장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		300							
10. 대외민원 유발	공사의 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민원 유발 시(인터넷, 신문 등 언론보도)		300							
11. 근전공·필수장비 부적정 운영	① 계약기간동안 기 신고 된 7.자의 인원, 장비, 야적장 및 현장사무소 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작업통보서와 현장의 기능인력·장비가 상이한 경우 ③ 협력회사에 소속된 기능 인력·장비를 타회사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한 경우 ④ 자격증만 빌려 상근 I 인력 숫자를 맞추는 경우 ⑤ 상근 I 무정전 전공 5명 각각의 현장 투입 횟수가 월 60% 미만일 경우		500							
12. 보안관리 미흡	보안위규 및 부적정 설계 행위 적발시		500							
13. 시공관리책임자 상주 위반	시공관리책임자 현장 미 상주 시		300							
14. 지시 불이행	① 정책변경 및 중점 요구사항 미 이행 ② 사업소에서 참석 요청한 회의 및 교육 불참		100							

현행	개정	비고																																																							
	<table><tr><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감점</th><th>주기</th></tr><tr><td rowspan="4">⑧ 정전 유발</td><td rowspan="4">■ 작업중 또는 공사에서 하차로 정전발생</td><td>일시정전(A~C등급)</td><td>700</td><td rowspan="4">발생시</td></tr><tr><td>일시정전(D등급)</td><td>400</td></tr><tr><td>순간정전</td><td>300</td></tr><tr><td>순시정전</td><td>200</td></tr><tr><td>⑨ 실사결과 부적합</td><td>■ 협력회사가 실사서류 미제출 및 실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td><td>500</td><td>건</td></tr><tr><td>⑩ 시공도면 불일치에 따른 계통변경 작업</td><td>■ 협력회사에서 제출한 시공(계통)도면과 현장시공 계통이 불일치하여, 계통변경 작업 (번호찰 및 도면 수정 등) 추가 수행 시</td><td>100</td><td>건</td></tr></table>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⑧ 정전 유발	■ 작업중 또는 공사에서 하차로 정전발생	일시정전(A~C등급)	700	발생시	일시정전(D등급)	400	순간정전	300	순시정전	200	⑨ 실사결과 부적합	■ 협력회사가 실사서류 미제출 및 실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500	건	⑩ 시공도면 불일치에 따른 계통변경 작업	■ 협력회사에서 제출한 시공(계통)도면과 현장시공 계통이 불일치하여, 계통변경 작업 (번호찰 및 도면 수정 등) 추가 수행 시	100	건																																	
평가항목	평가방법	감점	주기																																																						
⑧ 정전 유발	■ 작업중 또는 공사에서 하차로 정전발생	일시정전(A~C등급)	700	발생시																																																					
		일시정전(D등급)	400																																																						
		순간정전	300																																																						
		순시정전	200																																																						
⑨ 실사결과 부적합	■ 협력회사가 실사서류 미제출 및 실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500	건																																																						
⑩ 시공도면 불일치에 따른 계통변경 작업	■ 협력회사에서 제출한 시공(계통)도면과 현장시공 계통이 불일치하여, 계통변경 작업 (번호찰 및 도면 수정 등) 추가 수행 시	100	건																																																						
14. 타절준공	14. 타절준공	○ 문구 수정 및 적용기준 명확화																																																							
14.2 타절 준공 통보	14.2 타절 준공 통보																																																								
<table><tr><th>일자</th><th>주체</th><th>내용</th><th>비고</th></tr><tr><td>D+0</td><td>한전</td><td>• 누계별점 도달일 기준, 협력회사 시공통보 내역(미준공)을 추출</td><td>타절 준공 시 본부 일괄 추출 그 외 해당사업소</td></tr><tr><td>D+2</td><td>한전 → 협력회사</td><td>• 시공 통보된건의 시공을 확인의뢰 • 시공 이행계획 제출 요구</td><td>공문, 지정양식</td></tr><tr><td>D+7</td><td>협력회사 → 한전</td><td>• 개별 공사건의 시공을 확인 회신</td><td>공문, 송부양식</td></tr><tr><td>D+12</td><td>한전</td><td>• 시공을 검토 및 타절준공 합의 • 미합의건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 상정</td><td>해당사업소</td></tr><tr><td>D+14</td><td>한전</td><td>• 타절준공 대상 선정 심의</td><td>본부</td></tr><tr><td>D+15</td><td>한전 ↔ 협력회사</td><td>• 심의 결과를 통보 - 건별 조치사항(타절 여부 등) •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상호 서명)</td><td>공문, 건별결과 공문, 지정양식</td></tr></table>	일자	주체	내용	비고	D+0	한전	• 누계별점 도달일 기준, 협력회사 시공통보 내역(미준공)을 추출	타절 준공 시 본부 일괄 추출 그 외 해당사업소	D+2	한전 → 협력회사	• 시공 통보된건의 시공을 확인의뢰 • 시공 이행계획 제출 요구	공문, 지정양식	D+7	협력회사 → 한전	• 개별 공사건의 시공을 확인 회신	공문, 송부양식	D+12	한전	• 시공을 검토 및 타절준공 합의 • 미합의건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 상정	해당사업소	D+14	한전	• 타절준공 대상 선정 심의	본부	D+15	한전 ↔ 협력회사	• 심의 결과를 통보 - 건별 조치사항(타절 여부 등) •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상호 서명)	공문, 건별결과 공문, 지정양식	<table><tr><th>일자</th><th>주체</th><th>내용</th><th>비고</th></tr><tr><td>D+0</td><td>한전</td><td>• <u>계약해지 누계별점 도달일 또는 계약종료일 기준, 협력회사 미준공 내역 추출</u></td><td>타절 준공 시 본부 일괄 추출 그 외 해당사업소</td></tr><tr><td>D+2</td><td>한전 → 협력회사</td><td>• 시공 통보된건의 시공<u>률</u> 확인의뢰 • 시공 이행계획 제출 요구</td><td>공문, 지정양식</td></tr><tr><td>D+7</td><td>협력회사 → 한전</td><td>• 개별 공사건의 시공<u>률</u> 확인 회신</td><td>공문, 송부양식</td></tr><tr><td>D+12</td><td>한전</td><td>• 시공<u>률</u> 검토 및 타절준공 합의 • 미합의건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 상정</td><td>해당사업소</td></tr><tr><td>D+14</td><td>한전</td><td>•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u> 심의</td><td>본부</td></tr><tr><td>D+15</td><td>한전 ↔ 협력회사</td><td>• 심의 결과를 통보 - 건별 조치사항(타절 여부 등) •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상호 서명)</td><td>공문, 건별결과 공문, 지정양식</td></tr></table>	일자	주체	내용	비고	D+0	한전	• <u>계약해지 누계별점 도달일 또는 계약종료일 기준, 협력회사 미준공 내역 추출</u>	타절 준공 시 본부 일괄 추출 그 외 해당사업소	D+2	한전 → 협력회사	• 시공 통보된건의 시공 <u>률</u> 확인의뢰 • 시공 이행계획 제출 요구	공문, 지정양식	D+7	협력회사 → 한전	• 개별 공사건의 시공 <u>률</u> 확인 회신	공문, 송부양식	D+12	한전	• 시공 <u>률</u> 검토 및 타절준공 합의 • 미합의건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 상정	해당사업소	D+14	한전	•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u> 심의	본부	D+15	한전 ↔ 협력회사	• 심의 결과를 통보 - 건별 조치사항(타절 여부 등) •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상호 서명)	공문, 건별결과 공문, 지정양식
일자	주체	내용	비고																																																						
D+0	한전	• 누계별점 도달일 기준, 협력회사 시공통보 내역(미준공)을 추출	타절 준공 시 본부 일괄 추출 그 외 해당사업소																																																						
D+2	한전 → 협력회사	• 시공 통보된건의 시공을 확인의뢰 • 시공 이행계획 제출 요구	공문, 지정양식																																																						
D+7	협력회사 → 한전	• 개별 공사건의 시공을 확인 회신	공문, 송부양식																																																						
D+12	한전	• 시공을 검토 및 타절준공 합의 • 미합의건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 상정	해당사업소																																																						
D+14	한전	• 타절준공 대상 선정 심의	본부																																																						
D+15	한전 ↔ 협력회사	• 심의 결과를 통보 - 건별 조치사항(타절 여부 등) •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상호 서명)	공문, 건별결과 공문, 지정양식																																																						
일자	주체	내용	비고																																																						
D+0	한전	• <u>계약해지 누계별점 도달일 또는 계약종료일 기준, 협력회사 미준공 내역 추출</u>	타절 준공 시 본부 일괄 추출 그 외 해당사업소																																																						
D+2	한전 → 협력회사	• 시공 통보된건의 시공 <u>률</u> 확인의뢰 • 시공 이행계획 제출 요구	공문, 지정양식																																																						
D+7	협력회사 → 한전	• 개별 공사건의 시공 <u>률</u> 확인 회신	공문, 송부양식																																																						
D+12	한전	• 시공 <u>률</u> 검토 및 타절준공 합의 • 미합의건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 상정	해당사업소																																																						
D+14	한전	•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u> 심의	본부																																																						
D+15	한전 ↔ 협력회사	• 심의 결과를 통보 - 건별 조치사항(타절 여부 등) • 타절준공 합의서 작성(상호 서명)	공문, 건별결과 공문, 지정양식																																																						

현 행	개 정	비 고
14.3 공사 타절준공 대상 선정 14.3.5 “공사중지(타절)” 대상에 대하여 협력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건에 대한 협력회사 의견을 수렴한 뒤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에 상정한다. 14.4 1차사업소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원회 1) 1차 사업소 배전 협력회사 담당 부서장은 2차 사업소에서 제출한 미합의된 타절준공 대상 건들에 대하여 1차사업소 단위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사중지(타절)”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타절준공 대상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최소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위원장 : 전력사업처장 나) 위 원 : 배전 공사부서(2차사업소 포함) 및 계약부서 2직급 다) 간 사 :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 차장 3) 타절준공 대상 선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4.3 공사 타절준공 대상 선정 14.3.5 “공사중지(타절)” 대상에 대하여 협력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건에 대한 협력회사 의견을 수렴한 뒤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u>에 상정하여 <u>공사중지(타절)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대상 선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u> <u>14.3.6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는 [별표17]에 따르며,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타절준공 대상 건들은 해당 2차사업소 및 협력회사에 최종 통보한다.</u> <u>(삭 제)</u>	○ 타절준공 결정을 위한 절차 명확화

현행	개정	비고												
14.5 계약해지 예정업체의 타절선고 대상 14.6 타절공사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2) 준공 검사 <table><tr><th>주관</th><th>시공 부서</th></tr><tr><td>협력회사 담당차장</td><td>전력공급부 또는 배전운영부 차장 1~2명</td></tr><tr><td> • 시공내역 추출 • 검사자 임명 품의 • 취합 및 종합 보고 • 타절준공 합의 </td><td> • 시공률 확인 • 준공 검수(현장, 시스템) • 반환자재 확인(수량, 상태) </td></tr></table>	주관	시공 부서	협력회사 담당차장	전력공급부 또는 배전운영부 차장 1~2명	• 시공내역 추출 • 검사자 임명 품의 • 취합 및 종합 보고 • 타절준공 합의	• 시공률 확인 • 준공 검수(현장, 시스템) • 반환자재 확인(수량, 상태)	<u>14.4</u> 계약해지 예정업체의 타절선고 대상 <u>14.5</u> 타절공사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2) 준공 검사 <table><tr><th>주관</th><th>시공 부서</th></tr><tr><td>협력회사 담당차장</td><td>전력공급부(팀) 및 배전운영부(팀) 차장</td></tr><tr><td> • 시공내역 추출 • 취합 및 종합 보고 • 타절준공 합의 </td><td> • 시공률 확인 • <u>검사자 임명 품의</u> • 준공 검수(현장, 시스템) • 반환자재 확인(수량, 상태) </td></tr></table>	주관	시공 부서	협력회사 담당차장	전력공급부(팀) 및 배전운영부(팀) 차장	• 시공내역 추출 • 취합 및 종합 보고 • 타절준공 합의	• 시공률 확인 • <u>검사자 임명 품의</u> • 준공 검수(현장, 시스템) • 반환자재 확인(수량, 상태)	○ 문구 정비 ○ 담당자 및 역할 재정비
주관	시공 부서													
협력회사 담당차장	전력공급부 또는 배전운영부 차장 1~2명													
• 시공내역 추출 • 검사자 임명 품의 • 취합 및 종합 보고 • 타절준공 합의	• 시공률 확인 • 준공 검수(현장, 시스템) • 반환자재 확인(수량, 상태)													
주관	시공 부서													
협력회사 담당차장	전력공급부(팀) 및 배전운영부(팀) 차장													
• 시공내역 추출 • 취합 및 종합 보고 • 타절준공 합의	• 시공률 확인 • <u>검사자 임명 품의</u> • 준공 검수(현장, 시스템) • 반환자재 확인(수량, 상태)													
16.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16.1 협력회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직원 업무 능력 향상 교육에 참여 하여야 한다. 16.1.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필요시 전공도 가능) 가) 고압 협력회사 : 시공관리책임자(필요시 전공도 가능) 나) 저압 협력회사 : 저압 협력회사 종사자 전체 16.2 계약상대자는 ‘가’항에 의한 교육 이외에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다음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16.2.1 교육대상 : 재해방지책임자(사업주) 16.2.2 교육시기 : 연 1회 16.2.3 교육주관 : 본부 안전재난부 16.2.4 교육내용 : 정부정책 변화, 고급 안전경영 정보 및 안전관리기법 등	16. 협력회사 종사자 교육 (삭 제) <u>계약상대자는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다음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u> <u>16.1</u> 교육대상 : 재해방지책임자(사업주) <u>16.2</u> 교육시기 : 연 1회 <u>16.3</u> 교육주관 : 본부 안전재난부(<u>CS교육 : 본부 고객지원부</u>) <u>16.4</u> 교육내용 : 정부정책 변화, 안전경영 정보, 안전관리 기법, <u>CS</u> 등	○ 파견법 저촉관련 종사자 및 전공 교육 삭제 ○ CS교육 반영												

현 행	개 정	비 고
17. 기 타 17.5 한전은 시공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에 의하여 협력회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협력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7.7 (중략) 단, 계약상대자는 합병 등 정산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내 보험료 지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26.1.1 이후 준공분부터 적용) 17.8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NDIS 및 DAS 도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며,(중략)	17. 기 타 17.5 한전은 시공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에 의하여 <u>재해방지책임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에</u>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협력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u>또한 재해방지책임자 등 교육 이수자는 소속 직원에게 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17.7 (중략) 단, 계약상대자는 합병 등 정산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내 보험료 지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27.1.1 이후 준공분부터 적용) 17.8 계약상대자는 한전의 NDIS 및 <u>ADMS</u> 도면에 대한 <u>보안 관리 이행</u> 의무가 있으며,(중략)	○ 파견법 관련 종사자 교육 삭제 ○ 문구 정비 ○ 문구 정비
19. 별표 【별표17】 고압 협력회사 기능인력 점검 참고사항	19. 별표 【별표17】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기준</u>	○ 문구 정비

현행						개정						비고			
[별표1] 전문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별표1] 전문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 동작 경보장치 추가			
1. 기본 장비·공구류						1. 기본 장비·공구류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 활선공구 추가	
장비	1	절연버켓트럭(다기능 무정전 고소작업차량 인정가능)	작업높이 15m 이상,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 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3이상	장비	1	절연버켓트럭(다기능 무정전 고소작업차량 인정가능)	작업높이 15m 이상, 아웃트리거 인터록 및 동작 경보장치 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3이상		
	2	오가크레인 또는 백호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2	오가크레인 또는 백호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3	카고크레인	3.5톤 이상 트럭,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3	카고크레인	3.5톤 이상 트럭,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4	화물자동차	1.0톤 이상 트럭,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4	화물자동차	1.0톤 이상 트럭,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이상		
공구	7	절연스틱작업공구					공구	7	절연스틱작업공구					○ 주석 변경	
	7.1	절연스틱	핫스틱, 로터스틱, 핸드스틱, 그랩스틱 (동등 이상 기능 절연스틱 인정가능)		개	각2이상		7.1	절연스틱	핫스틱, 로터스틱, 핸드스틱, 그랩스틱 (동등 이상 기능 절연스틱 인정가능)		개	각2이상		
	7.2	유압식 절단기	ACSR 32~240mm 용		개	2이상		7.2	유압식 절단기	ACSR 32~240mm 용		개	2이상		
	7.3	유압식 압축기	ACSR 32~240mm용(10 ~ 13톤)		개	2이상		7.3	유압식 압축기	ACSR 32~240mm용(10 ~ 13톤)		개	2이상		
	7.4	전동공구	로터스틱 부착형		개	2이상		7.4	전동공구	로터스틱 부착형		개	2이상		
	7.5	보조암	절연버켓트럭 부착형		개	1이상		7.5	보조암	절연버켓트럭 부착형		개	1이상		
	7.6	전선인장기	인장강도 1ton이상		개	3이상		7.6	전선인장기	인장강도 1ton이상		개	3이상		
	7.7	전선압축기의 압축력시험기	10톤 ~ 13톤 겸용 (아날로그식 또는 디지털식)		대	1이상		7.7	절괴선 고정공구	A, B, C형		개	6이상		
	7.8							그립올클램프스틱	길이 1.8m 이상(안전주의커버 부착형)		개	1이상			
주1) 순번 1~6은 임대사용가능						주1) 순번 1~6은 임대사용가능						○ 주석 변경			
- 영업용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동일장비의 중복임대는 불가						- 영업용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동일장비의 중복임대는 불가									
- 절연버켓트럭은 인터록 장치와 후방센서·카메라가 설치된 차량만 임대가능						- 절연버켓트럭은 아웃트리거 인터록 및 동작 경보장치와 후방센서·카메라가 설치된 차량만 임대가능									
						- 보유 장비의 작업가능 높이 이상의 고소작업 발생 시 필요 장비 임대 사용									

현행	개정	비고
주2) 순번 5 바이패스케이블은 - ‘특고압 전선 체결용 클램프’는 ‘임시결이’가 능 제품 보유시 인정 - 중간케이블과 개폐기 접속케이블의 총 길이가 900m 이상 보유시 인정(3상 300m 기준) - 기타 부속자재는 간접활선 표준작업절차서에 명시 주3) 위 기본 장비·공구류 외 활선·무정전 공법에 사용하 는 장비·공구는 해당공법에 적합한 장비·공구를 만드 시 확보(구매 또는 임대 등) 하고 공사 시행(표준작업 절차서 공종별 사용 장비 및 공구 참고) 주6)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를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주2) 순번 5 바이패스케이블은 - ‘특고압 전선 체결용 클램프’는 ‘임시결이’가 능 제품 보유시 인정 - 중간케이블과 개폐기 접속케이블의 총 길이가 900m 이상 보유시 인정(3상 300m 기준) - <u>케이블은 일반 배전선로 상시 운전용량 기준 내의 무정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비(보유 케이블 용량 부족 시 대용량 바이패스케이블 임대 사용)</u> - 기타 부속자재는 <u>절연스틱작업</u> 표준절차서에 명시 주3) 위 기본 장비·공구류 외 활선·무정전 공법에 사용하 는 장비·공구는 해당공법에 적합한 장비·공구를 만드 시 확보(구매 또는 임대 등) 하고 공사 시행(<u>절연스틱 작업</u> 표준작업절차서 공종별 사용 장비 및 공구 참고) 주6) <u>작업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신호수 제외)는 반 드시 무전기를 보유하여야 함</u> <u>주7)</u>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를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 대용량 바이패스 케이블 기준 추가 ○ 문구 수정 ○ 무전기 보유 항목 추가 ○ 순번 정비

현행							개정							비고	
2. 지중공사용 장비 및 장구류							2. 지중공사용 장비 및 장구류							○ 지상개폐기 절연캡 추가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치	1	케이블 상추적 판별기	펄스식 (맨홀 및 관로내 케이블 사활구분)	대	1		장치	1	케이블 상추적 판별기	펄스식 (맨홀 및 관로내 케이블 사활구분)	대	1			
공구	2	전동식 압축기 (충전식 압축기 인정 가능)	13톤 ~ 15톤용	대	2		공구	2	전동식 압축기 (충전식 압축기 인정 가능)	13톤 ~ 15톤용	대	2			
			25톤~30톤용 (유압기와 압축기헤드 중간압력 게이지설치)		1					25톤~30톤용 (유압기와 압축기헤드 중간압력 게이지설치)		1			
	3	케이블 절단기	600mm 이상(전동식)	대	1			3	케이블 절단기	600mm 이상(전동식)	대	1			
	4	케이블 피박기	반도전충용	대	2			4	케이블 피박기	반도전충용	대	2			
			절연충용	대	2					절연충용	대	2			
	5	토오크 렌치	1" 820kg-cm (테드형개폐기BIP 조립용)	개	2			5	토오크 렌치	1" 820kg-cm (테드형개폐기BIP 조립용)	개	2			
	6	지중기기 조작봉	절연스틱	개	3			6	지중기기 조작봉	절연스틱	개	3			
계측기	7	절연방전봉	AC 30kV급 이하	개	1		계측기	7	절연방전봉	AC 30kV급 이하	개	1			
	8	장력계	7.5 Ton	대	1			8	장력계	7.5 Ton	대	1			
	9	지상기기용 상측정기	고압활선부 비접촉식 (엘보접촉식)	대	3			9	지상기기용 상측정기	고압활선부 비접촉식 (엘보접촉식)	대	3			
	10	저압용 검상기	저압케이블 검상용	대	2			10	저압용 검상기	저압케이블 검상용	대	2			
	11	휴대용 누설전압전류계	저압 접속개소 누설전류 전압측정	대	1			11	휴대용 누설전압전류계	저압 접속개소 누설전류 전압측정	대	1			
	12	특고압용 검상기	7,000V이상 상 확인 시험용	대	1			12	특고압용 검상기	7,000V이상 상 확인 시험용	대	1			
	13	절연저항 측정기	5,000/10,000V접용 400GΩ (특고압용)	대	1			13	절연저항 측정기	5,000/10,000V접용 400GΩ (특고압용)	대	1			
			500V 1,000MΩ (저압용)		1					500V 1,000MΩ (저압용)		1			
	14	검전기	다전압 휴대용 검전기 (3.3~35kV)	대	3			14	검전기	다전압 휴대용 검전기 (3.3~35kV)	대	3			
기타	15	용량성 검전기	AC 5~35kV	대	1		기타	15	용량성 검전기	AC 5~35kV	대	1			
	16	가스탐지기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용	대	1			16	가스탐지기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용	대	1			
	17	가스제거기	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	대	1			17	가스제거기	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	대	1			
	18	내화절연방호구	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	Set	1			18	내화절연방호구	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	Set	1			
	19	절연매트	지중 작업자 절연향상	개	1			19	절연매트	지중 작업자 절연향상	개	1			
	20	접지엘보	370GLR	개	6			20	접지엘보	370GLR	개	6			
	21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21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22	절연캡	지상변압기 및 <u>지상개폐기</u> 부싱절연	개	<u>각</u> 6			22	절연캡	지상변압기 및 <u>지상개폐기</u> 부싱절연	개	<u>각</u> 6			

현행	개정	비고																																																																										
이상 보유시 인정(3상 300m 기준) - 기타 부속자재는 간접활선 표준작업절차서에 명시 주3) 위 기본 장비·공구류 외 활선·무정전 공법에 사용하는 장비·공구는 해당공법에 적합한 장비·공구를 반드시 확보(구매 또는 임대 등) 하고 공사 시행(간접활선 표준작업절차서 공종별 사용 장비 및 공구 참고) 주6)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를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이상 보유시 인정(3상 300m 기준) - <u>케이블은 일반 배전선로 상시 운전용량 기준 내의 무정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비(보유 케이블 용량 부족 시 대용량 바이패스케이블 임대 사용)</u> - 기타 부속자재는 <u>절연스틱작업</u> 표준절차서에 명시 주3) 위 기본 장비·공구류 외 활선·무정전 공법에 사용하는 장비·공구는 해당공법에 적합한 장비·공구를 반드시 확보(구매 또는 임대 등) 하고 공사 시행(<u>절연스틱작업</u> 표준절차서 공종별 사용 장비 및 공구 참고) 주6) <u>작업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신호수 제외)는 반드시 무전기를 보유하여야 함</u> <u>주7)</u> 이 외 한전 설계·시공 기준 및 안전작업수칙에 명시된 표준 장비·공구·계측기를 확보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 대용량 바이패스 케이블 기준 추가 ○ 무전기 보유항목 추가 ○ 순번 정비																																																																										
2. 지중공사용 장비 및 장구류 <table><tr><th>구분</th><th>순번</th><th>품명</th><th>규격 및 용도</th><th>단위</th><th>수량</th></tr><tr><td rowspan="6">기타</td><td>17</td><td>가스제거기</td><td>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td><td>대</td><td>1</td></tr><tr><td>18</td><td>내화절연방호구</td><td>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td><td>Set</td><td>1</td></tr><tr><td>19</td><td>절연매트</td><td>지중 작업자 절연향상</td><td>개</td><td>1</td></tr><tr><td>20</td><td>접지엘보</td><td>370GLR</td><td>개</td><td>6</td></tr><tr><td>21</td><td>절연부싱</td><td>Stand off Insulator</td><td>개</td><td>6</td></tr><tr><td>22</td><td>절연캡</td><td>지상변압기 부싱절연</td><td>개</td><td>6</td></tr></table>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기타	17	가스제거기	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	대	1	18	내화절연방호구	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	Set	1	19	절연매트	지중 작업자 절연향상	개	1	20	접지엘보	370GLR	개	6	21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22	절연캡	지상변압기 부싱절연	개	6	2. 지중공사용 장비 및 장구류 <table><tr><th>구분</th><th>순번</th><th>품명</th><th>규격 및 용도</th><th>단위</th><th>수량</th></tr><tr><td rowspan="6">기타</td><td>17</td><td>가스제거기</td><td>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td><td>대</td><td>1</td></tr><tr><td>18</td><td>내화절연방호구</td><td>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td><td>Set</td><td>1</td></tr><tr><td>19</td><td>절연매트</td><td>지중 작업자 절연향상</td><td>개</td><td>1</td></tr><tr><td>20</td><td>접지엘보</td><td>370GLR</td><td>개</td><td>6</td></tr><tr><td>21</td><td>절연부싱</td><td>Stand off Insulator</td><td>개</td><td>6</td></tr><tr><td>22</td><td>절연캡</td><td>지상변압기 및 <u>지상개폐기</u> 부싱절연</td><td>개</td><td><u>각</u> 6</td></tr></table>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기타	17	가스제거기	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	대	1	18	내화절연방호구	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	Set	1	19	절연매트	지중 작업자 절연향상	개	1	20	접지엘보	370GLR	개	6	21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22	절연캡	지상변압기 및 <u>지상개폐기</u> 부싱절연	개	<u>각</u> 6	○ 지상개폐기 절연캡 추가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기타	17	가스제거기	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	대	1																																																																							
	18	내화절연방호구	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	Set	1																																																																							
	19	절연매트	지중 작업자 절연향상	개	1																																																																							
	20	접지엘보	370GLR	개	6																																																																							
	21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22	절연캡	지상변압기 부싱절연	개	6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기타	17	가스제거기	가스제거기 또는 휴대용 맨홀가스배출기	대	1																																																																							
	18	내화절연방호구	지상기기 방호, 오조작 예방	Set	1																																																																							
	19	절연매트	지중 작업자 절연향상	개	1																																																																							
	20	접지엘보	370GLR	개	6																																																																							
	21	절연부싱	Stand off Insulator	개	6																																																																							
	22	절연캡	지상변압기 및 <u>지상개폐기</u> 부싱절연	개	<u>각</u> 6																																																																							

현행						개정						비고																																													
[별표 3-1]						[별표 3-1]						○ 장비기준 명확화																																													
저압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저압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table><tr><th>구분</th><th>순번</th><th>품명</th><th>규격 및 용도</th><th>단위</th><th>수량</th></tr><tr><td>장비</td><td>1</td><td>절연버켓트럭^{주1-2)}</td><td>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td><td>대</td><td>1</td></tr><tr><td rowspan="2">기타</td><td>6</td><td>투광기</td><td>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또는 LED 조명등 4W이상(7시간 이상 지속)</td><td>대</td><td>3</td></tr><tr><td>7</td><td>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td><td>추후 별도 안내</td><td>대</td><td>1대 이상</td></tr></table>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주1-2)}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기타	6	투광기	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또는 LED 조명등 4W이상(7시간 이상 지속)	대	3	7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	추후 별도 안내	대	1대 이상	<table><tr><th>구분</th><th>순번</th><th>품명</th><th>규격 및 용도</th><th>단위</th><th>수량</th></tr><tr><td>장비</td><td>1</td><td>절연버켓트럭^{주1-2)}</td><td><u>작업높이 11m 이상,</u>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td><td>대</td><td>1</td></tr><tr><td rowspan="2">기타</td><td>6</td><td>투광기</td><td>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또는 LED 조명등 4W이상(7시간 이상 지속)</td><td>대</td><td>3</td></tr><tr><td>7</td><td>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td><td><u>모바일 데이터 통신(LTE 등) 지원 태블릿 (계기 시공결과 입력, 저압정전복구 등 현장 업무용 App, Web 구동 및 사용이 가능한 기기)</u></td><td>대</td><td>1대 이상</td></tr></table>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주1-2)}	<u>작업높이 11m 이상,</u>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기타	6	투광기	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또는 LED 조명등 4W이상(7시간 이상 지속)	대	3	7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	<u>모바일 데이터 통신(LTE 등) 지원 태블릿 (계기 시공결과 입력, 저압정전복구 등 현장 업무용 App, Web 구동 및 사용이 가능한 기기)</u>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주1-2)}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기타	6	투광기	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또는 LED 조명등 4W이상(7시간 이상 지속)	대	3																																																				
	7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	추후 별도 안내	대	1대 이상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주1-2)}	<u>작업높이 11m 이상,</u>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기타	6	투광기	휴대용 집중식 랜턴(실드빔 50W) (차량용 포함) 또는 LED 조명등 4W이상(7시간 이상 지속)	대	3																																																				
	7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	<u>모바일 데이터 통신(LTE 등) 지원 태블릿 (계기 시공결과 입력, 저압정전복구 등 현장 업무용 App, Web 구동 및 사용이 가능한 기기)</u>	대	1대 이상																																																				
주2) 3.5t급 절연버켓트럭 및 1.2t급 소형 절연 버켓트럭 모두 가능						주2) 3.5t급 절연버켓트럭 및 1.2t급 소형 절연 버켓트럭(<u>작업 가능 높이 11m 이상</u>) 모두 가능																																																			
[별표 3-2]						[별표 3-2]						○ 장비기준 명확화																																													
도시 저압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도시 저압 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table><tr><th>구분</th><th>순번</th><th>품명</th><th>규격 및 용도</th><th>단위</th><th>수량</th></tr><tr><td>장비</td><td>1</td><td>절연버켓트럭^{주2)}</td><td>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td><td>대</td><td>1</td></tr><tr><td>기타</td><td>9</td><td>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td><td>추후 별도 안내</td><td>대</td><td>1대 이상</td></tr></table>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주2)}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기타	9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	추후 별도 안내	대	1대 이상	<table><tr><th>구분</th><th>순번</th><th>품명</th><th>규격 및 용도</th><th>단위</th><th>수량</th></tr><tr><td>장비</td><td>1</td><td>절연버켓트럭^{주2)}</td><td><u>작업높이 11m 이상,</u>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td><td>대</td><td>1</td></tr><tr><td>기타</td><td>9</td><td>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td><td><u>모바일 데이터 통신(LTE 등) 지원 태블릿 (계기 시공결과 입력, 저압정전복구 등 현장 업무용 App, Web 구동 및 사용이 가능한 기기)</u></td><td>대</td><td>1대 이상</td></tr></table>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주2)}	<u>작업높이 11m 이상,</u>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기타	9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	<u>모바일 데이터 통신(LTE 등) 지원 태블릿 (계기 시공결과 입력, 저압정전복구 등 현장 업무용 App, Web 구동 및 사용이 가능한 기기)</u>	대	1대 이상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주2)}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기타	9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	추후 별도 안내	대	1대 이상																																																				
구분	순번	품명	규격 및 용도	단위	수량																																																				
장비	1	절연버켓트럭 ^{주2)}	<u>작업높이 11m 이상,</u> 아웃트리거 인터록 안전장치설치, 후방센서·카메라 장착	대	1																																																				
기타	9	시공결과 입력 현장 업무용 태블릿 PC	<u>모바일 데이터 통신(LTE 등) 지원 태블릿 (계기 시공결과 입력, 저압정전복구 등 현장 업무용 App, Web 구동 및 사용이 가능한 기기)</u>	대	1대 이상																																																				

현행						개정						비고	
[별표 4]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고압 협력회사]						[별표 4]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고압 협력회사]						○ 항목 정비	
NO	항목	평가기준	감점	근거		NO	항목	평가기준	감점	근거			
1	안전 카바류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1	안전 카바류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2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1회당 50점 감점				2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3	교통안전원 미배치	1회당 30점 감점				3	부적격 전공 작업 투입	1회당 50점 감점					
4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4	불량장비, 공구 사용	1회당 30점 감점					
5	부적격 전공 작업 투입	1회당 50점 감점				5	전선공사시 연선로라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6	불량장비, 공구 사용	1회당 30점 감점				6	전주근입 미달 또는 근가 미시공	1개소당 50점 감점					
7	전선공사시 연선로라 미사용	1회당 50점 감점				7	타시설물, 수목 등과 이격거리 미달	1개소당 30점 감점					
8	전주근입 미달 또는 근가 미시공	1개소당 50점 감점				8	압축접속 불량(접속공법 미준수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9	타시설물, 수목 등과 이격거리 미달	1개소당 30점 감점				9	전선이도 불량(2단장주 완철간격 부적정)	1개소당 30점 감점					
10	압축접속 불량(접속공법 미준수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10	접지시공 불량(접지저항 미달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11	전선이도 불량(2단장주 완철간격 부적정)	1개소당 30점 감점				11	공사현장 뒤처리 불량	1건당 50점 감점					
12	접지시공 불량(접지저항 미달 포함)	1개소당 50점 감점				12	공사 준공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13	지급(사급, 지입) 자재 손망실	1건당 50점 감점				13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14	공사현장 뒤처리 불량	1건당 50점 감점				14	현장시공완료일 등록시 시공사진 미제출	1회당 30점 감점					
15	공사 준공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계		100점	감점	점	평점		
16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배점						
17	현장시공완료일 등록시 시공사진 미제출	1회당 30점 감점											
계	배점	100점	감점	점	평점								

현행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저압 협력회사]

NO	항목	평가기준	감점	근거
1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	1회당 50점 감점		
2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3	계기 오결선, 시험용단자 미접속	1회당 50점 감점		
4	불량장비, 공구 사용	1회당 30점 감점		
5	계기지침 등 전산사항 입력누락 또는 착오입력	1건당 30점 감점		
6	봉인불량 수용발생(미봉인, 탈락)	1개소당 50점 감점		
7	시공불량으로 인한 인입선 접속 상태 불량	1개소당 30점 감점		
8	접지저항 또는 절연저항 측정 등 누락	1개소당 30점 감점		
9	지급(사급, 지입) 자재 손망실	1건당 50점 감점		
10	선착공 공사 시공지체	1건당 50점 감점		
11	공사현장 뒤처리 불량	1건당 50점 감점		
12	공사 준공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13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계		배점	100점	감점
			점	평점

[별표 7]

중점사업소 명부

중점사업소명	1차 사업소	비고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개정

공사시공 품질 평가서

[저압 협력회사]

NO	항목	평가기준	감점	근거
1	무단정전 작업시행	1회당 30점 감점		
2	계기 오결선, 시험용단자 미접속	1회당 50점 감점		
3	불량장비, 공구 사용	1회당 30점 감점		
4	계기지침 등 전산사항 입력누락 또는 착오입력	1건당 30점 감점		
5	봉인불량 수용발생(미봉인, 탈락)	1개소당 50점 감점		
6	시공불량으로 인한 인입선 접속 상태 불량	1개소당 30점 감점		
7	접지저항 또는 절연저항 측정 등 누락	1개소당 30점 감점		
8	선착공 공사 시공지체	1건당 50점 감점		
9	공사현장 뒤처리 불량	1건당 50점 감점		
10	공사 준공서류 허위 작성	1건당 50점 감점		
11	공사 준공기일 지체	1일당 30점 감점		
계		배점	100점	감점
			점	평점

[별표 7]

중점사업소 명부

중점사업소명	1차 사업소	비고
광주전남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비고

○ 항목 정비

○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비 고																																				
[별표 8] 도시 서비스센터 관할사업소 명부 <table><tr><th>본 부</th><th>지 사</th><th>서비스센터</th><th>부속도서(주 도서는 밑줄로 표시)</th></tr><tr><td rowspan="2">광주전남 본부</td><td rowspan="2">고흥지사</td><td>금당</td><td>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충도, 신도, 대화도</td></tr><tr><td>금일</td><td>평일도, 생일도, 소랑도, 우도, 섭도, 부도</td></tr><tr><td rowspan="3">경남본부</td><td rowspan="3">통영지사</td><td>한산</td><td>한산도, 좌도, 방화도, 화도, 비산도, 죽도, 용초도, 비진도, 추봉도, 유자도</td></tr><tr><td>사랑</td><td>사랑, 아랫</td></tr><tr><td>욕지</td><td>욕지도, 두미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연화열도, 우도</td></tr></table>	본 부	지 사	서비스센터	부속도서(주 도서는 밑줄로 표시)	광주전남 본부	고흥지사	금당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충도, 신도, 대화도	금일	평일도, 생일도, 소랑도, 우도, 섭도, 부도	경남본부	통영지사	한산	한산도, 좌도, 방화도, 화도, 비산도, 죽도, 용초도, 비진도, 추봉도, 유자도	사랑	사랑, 아랫	욕지	욕지도, 두미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연화열도, 우도	[별표 8] 도시 서비스센터 관할사업소 명부 <table><tr><th>본 부</th><th>지 사</th><th>서비스센터</th><th>부속도서(주 도서는 밑줄로 표시)</th></tr><tr><td rowspan="2">광주전남 본부</td><td rowspan="2">고흥지사</td><td>금당</td><td>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충도, 신도, 대화도</td></tr><tr><td>금일</td><td>평일도, 소랑도, 우도, 섭도, 부도</td></tr><tr><td rowspan="3">경남본부</td><td rowspan="3">통영지사</td><td>한산</td><td>한산도, 좌도, 방화도, 화도, 비산도, 죽도, <u>용호도</u>, 비진도, 추봉도, 유자도</td></tr><tr><td>사랑</td><td><u>사랑상도</u>, <u>사랑하도</u></td></tr><tr><td>욕지</td><td><u>욕지도</u>, 두미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u>연화도</u>, 우도</td></tr></table>	본 부	지 사	서비스센터	부속도서(주 도서는 밑줄로 표시)	광주전남 본부	고흥지사	금당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충도, 신도, 대화도	금일	평일도, 소랑도, 우도, 섭도, 부도	경남본부	통영지사	한산	한산도, 좌도, 방화도, 화도, 비산도, 죽도, <u>용호도</u> , 비진도, 추봉도, 유자도	사랑	<u>사랑상도</u> , <u>사랑하도</u>	욕지	<u>욕지도</u> , 두미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u>연화도</u> , 우도	○ 문구 수정
본 부	지 사	서비스센터	부속도서(주 도서는 밑줄로 표시)																																			
광주전남 본부	고흥지사	금당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충도, 신도, 대화도																																			
		금일	평일도, 생일도, 소랑도, 우도, 섭도, 부도																																			
경남본부	통영지사	한산	한산도, 좌도, 방화도, 화도, 비산도, 죽도, 용초도, 비진도, 추봉도, 유자도																																			
		사랑	사랑, 아랫																																			
		욕지	욕지도, 두미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연화열도, 우도																																			
본 부	지 사	서비스센터	부속도서(주 도서는 밑줄로 표시)																																			
광주전남 본부	고흥지사	금당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충도, 신도, 대화도																																			
		금일	평일도, 소랑도, 우도, 섭도, 부도																																			
경남본부	통영지사	한산	한산도, 좌도, 방화도, 화도, 비산도, 죽도, <u>용호도</u> , 비진도, 추봉도, 유자도																																			
		사랑	<u>사랑상도</u> , <u>사랑하도</u>																																			
		욕지	<u>욕지도</u> , 두미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u>연화도</u> , 우도																																			
[별표 11] 도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 3.1.1 다) 도서 서비스센터의 배전전공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 내에 고소작업대 조정 자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3.3 기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배전공사 협력 회사 업무처리기준 12항에 따른다.	[별표 11] 도시 서비스센터 업무처리지침 3.1.1 다) 도서 서비스센터의 배전전공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고소작업대 <u>조종</u> 자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3.3 기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배전공사 협력 회사 업무처리기준 <u>10항</u>에 따른다.	○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별표 12] 배전공사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5.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 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12. (중략)	[별표 12] 배전공사 공사업체조달품목 하자관리지침 5.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배전공사 <u>협력회사</u> 업무처리기준 12. (중략)	○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비 고
[별표 13] 【배전 협력회사 계약기간 종료 후 타절준공 상호 협약서】 (중 략) 제4조(하자책임) 협력회사는 타절준공 대상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한 구간에 대해서만 하자책임을 갖으며, 하자책임 기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4. 나항에 따른다. (중 략) 2024년 12월 00일	[별표 13] 【배전 협력회사 계약기간 종료 후 타절준공 상호 협약서】 (중 략) 제4조(하자책임) 협력회사는 타절준공 대상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한 구간에 대해서만 하자책임을 <u>가지며</u>, 하자책임 기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u>12.2</u>항에 따른다. (중 략) <u>2026</u>년 12월 00일	○ 문구 수정
[별표 14] 【협력회사 배전도면 사용 보안 서약서】 [협력회사 보안조치 사항] ■ 한전 배전도면(NDIS 및 DAS) 파일 : 삭제 ☞ 공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파일 암호화 보관	[별표 14] 【협력회사 배전도면 사용 보안 서약서】 [협력회사 보안조치 사항] ■ 한전 배전도면(NDIS 및 <u>ADMS</u>) 파일 : 삭제 ☞ 공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파일 암호화 보관	○ 문구 수정

현행

[별표 15]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에 필요한 배전 기능인력의 (가공배전전공, 지중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경력관리시스템(Career-Track) 구축 및 자격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진, 이메일, 자격증번호, 무정전 편조인원, 소속 협력회사
	선택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배전기능인력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만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구분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시공업체,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 및 배전 기능인력 양성 지정교육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별 공사 투입 및 시공실적 경력관리 체계 구축 · 기능자격 경력수첩 발급 및 종합관리 · 기타 자격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진, 이메일, 자격증번호, 무정전 편조인원, 소속 협력회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배전기능인력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만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별표 15]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에 필요한 배전 기능인력의 (가공배전전공, 지중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경력관리시스템(Career-Track) 구축 및 자격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진, 이메일, 자격증번호, 무정전 편조인원, 소속 협력회사, 위치정보
	선택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배전기능인력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만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구분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시공업체,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 및 배전 기능인력 양성 지정교육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별 공사 투입 및 시공실적 경력관리 체계 구축 · 기능자격 경력수첩 발급 및 종합관리 · 기타 자격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사진, 이메일, 자격증번호, 무정전 편조인원, 소속 협력회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배전기능인력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만료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 문구 추가

현행	개정	비고											
[별표 17] <u>고압 협력회사 기능인력 점검 참고사항</u> 1. 계약 전 낙찰예정자 인원·장비 전국 동시실사 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7.바. 낙찰예정자 구비 사항 및 7.사 인원 등 확인방법에 의한 계약 전 낙찰예정자 인원·장비 전국 동시실사시 상근 I 에 해당하는 기능인력은 해당 협력회사의 현장실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상근 I 보유기준</th></tr><tr><th>총원</th><th>직무별 구성</th></tr><tr><td>전문회사</td><td>9명 이상</td><td>무정전전공 5명 이상 및 배전전공 * 지중배전 2명이상 보유 필수(겸임가능)</td></tr><tr><td>협력사</td><td>7명 이상</td><td>무정전전공 3명 이상 및 배전전공 * 지중배전 2명이상 보유 필수(겸임가능)</td></tr></table> 나. 기능인력 소속여부에 대한 점검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 국민연금자격원부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또는 자격수첩(또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능인력의 자격은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 절차서” 의거 한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라 점검한다.	구분	상근 I 보유기준		총원	직무별 구성	전문회사	9명 이상	무정전전공 5명 이상 및 배전전공 * 지중배전 2명이상 보유 필수(겸임가능)	협력사	7명 이상	무정전전공 3명 이상 및 배전전공 * 지중배전 2명이상 보유 필수(겸임가능)	[별표 17] (삭제)	○ 타 절차서 내용 중복에 따라 기존 내용 삭제
구분		상근 I 보유기준											
	총원	직무별 구성											
전문회사	9명 이상	무정전전공 5명 이상 및 배전전공 * 지중배전 2명이상 보유 필수(겸임가능)											
협력사	7명 이상	무정전전공 3명 이상 및 배전전공 * 지중배전 2명이상 보유 필수(겸임가능)											

현 행	개 정	비 고
라. 착공 전 낙찰예정자에 대한 점검이므로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및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에 따른 기능인력(무정전 전공 및 지중배전 전공)의 시공능력 인증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아니한다. 2. 착공 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9. 나 작업종사자의 자격에 따라 착공 이후 계약상대자는 공사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자격 전공을 확보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사선공사 : 무정전전공, 활선전공 또는 배전전공 자격 소지자 2) 활선 및 무정전공사 : 무정전전공 자격 소지자로서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상「시공능력」이 인증된 자에 한하여 투입가능 ※ 시공능력 :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만족 ❶ 1년 이내에 무정전 공사 참여실적이 24H 이상인 경우 ❷ 무정전 전공 신규 자격취득 또는 갱신일이 1년 이내인 경우 ❸ 1년 이내에 무정전 전공 시공능력 인증평가에 합격한 경우 3) 지중공사 : 지중전공 자격 소지자로서 지중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 상 「시공능력」이 인증된 자에 한하여 투입 가능	(삭 제)	

현행	개정	비고
※ 시공능력 :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만족 ❶ 1년 이내에 지중배전 공사 참여실적이 40H 이상인 경우 ❷ 지중배전 전공 신규 자격취득 또는 갱신일이 1년 이내인 경우 ❸ 1년 이내에 지중배전 시공능력 인증평가에 합격한 경우 4) 신기술 대상 공사 : 한전이 정한 규정 또는 공문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이후 상근1 기능인력의 시공능력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13. 사후관리 나.에 따른 정기실사시 기능인력 시공능력 인증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점검한다.	(삭제)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u>1. 목 적</u> <u>이 기준은 사안별로 개별 운영되던 기존의 각 심의위원회를 단일의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본부별 협력회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	○ 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절차 신설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u>2. 심의사항</u> <u>협력회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다.</u> <u>2.1 추정도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u> <u>2.2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u> <u>2.3 타절준공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u> <u>2.4 협력회사 상근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u> <u>2.5 기타 필요사항 (지역본부 협력회사 운영 관련 중요 사항 등)</u> <u>3. 위원회의 구성</u> <u>3.1 위원장 : 전력사업처장</u> <u>3.2 위 원 : 사업소 2직급 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5인 이상, 홀수) 단, 심의사항과 관련된 부서장을 아래와 같이 필수로 참여시켜야 한다.</u> <u>3.2.1 추정도금액 조정, 타절준공 대상 선정 시: 계약부서장, 해당 사업소 공사부서장*</u> <u>3.2.2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 협력회사 상근인력 조정 시 해당 사업소 공사부서장*</u> <u>* 단, 3급사업소 중 배전 2직급 사업소장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배전 3직급 1인이 참석하고, 심의위원 구성은 제외</u>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u>3.2.3 다수 심의안건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1), 2)의 필요인원을 모두 만족하도록 구성한다.</u> <u>3.3 간 사 :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 차장</u> <u>4. 위원장의 임무</u> <u>4.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u> <u>4.1.1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안전 및 자료의 제출, 위원회의 출석, 설명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u> <u>4.1.2 위원장 부재시에는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5. 개의 및 의결</u> <u>5.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u> <u>5.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u> <u>5.3 추정도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u>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u>6. 심의내용</u> <u>6.1. 추정도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u> <u>6.1.1 해당 사업소의 추정도금액 조정 사유 및 조정금액의 적정성</u> <u>6.1.2 추정도금액 조정에 따른 협력회사 수량 및 공사권역 조정의 공정성</u> <u>가) 공사권역 통합 또는 분리의 타당성</u> <u>나) 공사권역 조정에 따른 해당 사업소 합의 여부</u> <u>다) 원거리 공사권역 통합에 따른 협력회사 업무수행 곤란 여부 등</u> <u>6.2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u> <u>6.2.1 공사권역별 협력회사간 수주편차 분석 및 발생 원인</u> <u>6.2.2 지역전담 기준금액의 상·하향 조정 금액의 적정성</u> <u>가) 기준금액 조정에 따른 해당사업소 의견 검토사항</u> <u>나) 기준금액 조정에 따른 협력회사 업무수행 곤란 여부 등</u> <u>6.2.3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 적용 기준일의 확정</u> <u>6.3 타절준공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u> <u>6.3.1 협력회사 이견이 있는 타절준공 대상건의 타절준공 여부 최종 결정</u>	

현행	개 정	비 고								
(신 설)	<u>6.3.2 타절준공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u> <table border="1"> <tr> <th>유형</th> <th>판정 방법</th> </tr> <tr> <td>신규</td> <td> - 고객 송전 일정과 연관성을 고려해 기 시공통보까지 공사 진행 단, 송전 일정이 공사일정과 여유가 있을 경우는 중단(타절) </td> </tr> <tr> <td>배전 선로 이설</td> <td> - 전액 당사부담과 고객부담공사, 이설 긴급성에 따라 판단 (전액 당사 부담)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 처리하여 준공 (전액 또는 일부 고객부담) 기존 협력회사에서 시공 단, 전액 당사부담공사 중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이설이 긴급하여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td> </tr> <tr> <td>보수, 운영</td> <td> - 공사타절 검토 시점의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준공처리 단, 위해개소 긴급처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td> </tr> </table>	유형	판정 방법	신규	고객 송전 일정과 연관성을 고려해 기 시공통보까지 공사 진행 단, 송전 일정이 공사일정과 여유가 있을 경우는 중단(타절)	배전 선로 이설	- 전액 당사부담과 고객부담공사, 이설 긴급성에 따라 판단 (전액 당사 부담)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 처리하여 준공 (전액 또는 일부 고객부담) 기존 협력회사에서 시공 단, 전액 당사부담공사 중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이설이 긴급하여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보수, 운영	공사타절 검토 시점의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준공처리 단, 위해개소 긴급처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유형	판정 방법								
	신규	고객 송전 일정과 연관성을 고려해 기 시공통보까지 공사 진행 단, 송전 일정이 공사일정과 여유가 있을 경우는 중단(타절)								
	배전 선로 이설	- 전액 당사부담과 고객부담공사, 이설 긴급성에 따라 판단 (전액 당사 부담)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 처리하여 준공 (전액 또는 일부 고객부담) 기존 협력회사에서 시공 단, 전액 당사부담공사 중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이설이 긴급하여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보수, 운영	공사타절 검토 시점의 시공 완료 부분까지만 정산하여 준공처리 단, 위해개소 긴급처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부서장 판단하에 공사 재발주 또는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품의 후 기존 협력회사 시행								
<u>6.4 협력회사 상근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u>										
<u>6.4.1 협력회사별 추정도금액 및 발주실적(계약도급비)의 편차 분석 및 발생 원인</u>										
<u>6.4.2 익년도 발주예상 실적 파악 및 상근인력 조정인원 적정여부 등</u> <u>가) 익년도 배전공사 예상물량 적정 여부, 상근인력 조정의 필요성</u> <u>나) 상근인력 증감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u> <u>① 발주물량 증가 예상 시 : 상근인력 충원 가능여부에 대해 협력회사 사전 협의</u> <u>② 발주물량 감소 예상 시 : 협력회사가 상근인력 보유 기준 감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수취 후 적정성 검토</u>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u>7. 의결결과 통보</u> <u>7.1 1차사업소 협력회사 담당부서는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u> <u>7.1.1 추정도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관련부서 및 2차사업소</u> <u>그 외의 사항 : 관련부서, 2차사업소 및 해당 협력회사</u> <u>7.2 조정결과에 대한 협력회사 통보는 서면(공문)으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u> <u>8. 비밀의 유지</u> <u>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인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회사의 경영정보나 내부 심의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